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5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0.

발 의 자 : 박수민 · 김선교 · 성일종
김미애 · 김소희 · 구자근
김은혜 · 곽규택 · 박성민
이양수 · 강명구 · 조정훈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광역철도를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정의하면서, 그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. 이 중 하나로 표정속도(表定速度,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)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. 그러나 정차역이 많아질수록 표정속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특성상, 광역철도 구간을 연장하며 교통 수요에 따라 역을 추가하고자 할 때 표정속도 요건이 규제로 작용하여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.

특히, 수도권 등에서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메가시티 광역생활권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역 신설이 표정속도 요건에 가로막히는 문제가 발생함.

이에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광역교

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수요에 따른 역의 증설을 통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나목 단서 및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등).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나목 중 “도시철도 또는 철도(이하 “광역철도”라 한다)”를
“도시철도 또는 철도(이하 “광역철도”라 한다).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
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“광역교통위원회”
라 한다)에서 정하는 표정속도(表定速度: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
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) 미
만인 도시철도 및 철도는 제외한다.

제3조의2제2항 본문 중 “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
“광역교통위원회”라 한다)의”를 “광역교통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
설한다.

9. 광역철도별 표정속도의 기준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광역교통시설”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	2. ----- ----- -----.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둘 이상의 시·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(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철도(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<u>도시철도 또는 철도(이하 “광역철도”라 한다)</u> <단서 신설>	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도시철도 또는 철도(이하 “광역철도”라 한다).</u> 다만, 제8조에 따른 <u>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</u>

다. ~ 아. (생략) 3. (생략) 제3조의2(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“광역교통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. ③ · ④ (생략) 제8조(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) ① (생략)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<u>(이하 “광역교통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정하는 표정속도(表定速度: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) 미만인 도시철도 및 철도는 제외한다.</u> 다. ~ 아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제3조의2(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<u>광역교통위원회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제8조(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
---	--

1. ~ 8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9.</u> (생략) ③ ~ ⑤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 <u>9. 광역철도별 표정속도의 기준</u> <u>에 관한 사항</u> <u>10.</u> (현행 제9호와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